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1188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 종결 2021. 3. 23.

판결 선고 2021. 4.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4,301,553원 및 그 중 9,820,851원에 대하여 2020.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22,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2019. 5. 14.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16. 3.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1,7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6.9%,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C는 대출금의 130%를 한도로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 주식회사는 2019. 10. 31.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원금 9,820,851원 및 이자)을 양도하고, 2019. 12. 4. 피고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0. 3. 4. 기준으로 위 대출금 중 변제하지 아니한 잔액은 원금 9,820,85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480,702원 합계 14,301,553원이다.

라. 한편, 피고 C의 모 F는 2018. 12. 6. 사망하였고, F의 자녀들인 G, 피고 D, 피고 C가 F의 상속재산을 각 1/3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F의 상속인들은 2019. 5. 14.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D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외에도 H은행에 2,812,000원, I카드에 400,000원,

은행에 1,405,000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7,967,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J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 서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14,301,553원(= 원금 9,820,851원 + 2020. 3. 4.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4,480,702원) 및 그 중 원금 9,820,851원에 대하여 2020. 3.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2,100,000원(= 대출원금 17,000,000원 x 보증한도 130%)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던 C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 피고 D가 이를 소유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D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대가로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 D의 주장대로 피고 D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가로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또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인데, 이를 뒤집을 아무런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재은

부동산 목록

1. 서울 은평구 K 대 89㎡

2. 서울 은평구 K

[도로명주소] 서울 은평구 L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3층 다가구용단독주택(4가구)

1층 내지 3층 각 50.53㎡(주택1), 지층 47.61㎡(주택1)

(구조-1층, 2층, 3층: 벽돌조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끝.

